

국제앰네스티 공개성명

2020년 3월 12일

Index Number: POL 30/1967/2020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의 인권 의무: 예비 관찰연구

목차

개요

코로나19 방역체계

- 격리
- 여행 금지 및 제한
- 정보 접근성, 투명성 및 검열
- 예방 조치, 용품 및 서비스
- 국가 비상사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및 비용
- 특정 집단이 겪는 특정하고 불균형적인 피해
- 사회 보장 및 노동권
- 낙인과 차별 방지
- 보건의료종사자 보호

국제 협력 및 공조

장기적인 회복과 후속조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와 기타 주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1)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에 관하여, (구체적인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우려 사항과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2)각국 대응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국가의 인권 의무, 인권 관련 주요 규범, 기준 및 원칙을 요약 정리한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격리, 여행 금지 등 정부의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와 더불어 예방 검진, 용품 및 서비스, 접근성 및 가격 합리성이 보장된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및 노동권 등에 대한 접근성, 낙인과 차별 방지,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국가의 국제 협력과 공조, 장기적인 회복, 후속조치 의무를 다룬다.

개요

본 보고서의 작성 시점인 현재, 거주 가능한 대륙 내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는 11만3,702명, 사망자는 4,000명이 확인되었다¹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전염병)으로 규정했다.² 이번 사태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나선 각국 정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관련 국가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과 의료진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의 건강을 가장 잘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온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준비, 봉쇄, 치료 등 모든 활동의 중심에 인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들을 제안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 일반 국민 등 모두의 온전한 인권 보장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국가는 독립성 원칙과 인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정치권 및 사회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인권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공중보건위기가 완화된 이후에나 보장되는 사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인권법의 완전하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혹은 잠재 접촉자의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고령자와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 중증도와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깨끗한 물, 안전한 위생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과 빈곤층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성할 때는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계획 및 전략에 취약계층의 필요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건강권은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 담긴 내용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건강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을 하나 이상 비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규약)이다. 본 규약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조치를 한다. 사회권규약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유엔 조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는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의한다.³ 일반논평 제14호에 따르면 "전염병과 풍토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조치"는 건강권 의무의 핵심(혹은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과 '비견할 만한 우선순위를 갖는 의무'이다.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당사국이 '불가침한' 핵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⁴

코로나19 방역체계

격리조치

격리조치(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대응책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대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다양한 강도의 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도시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⁵ 격리조치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며, 시행 방식에

¹ KFF, "세계보건정책추적(Global Health Policy Tracker)" 참고, 2020. 3. 10 기준, <http://www.kff.org/global-health-policy/fact-sheet/coronavirus-tracke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보고서(Coronavirus disease (COVID-2019) Situation Reports" 참고, 2020. 3. 10 기준, <http://www.kff.org/global-health-policy/fact-sheet/coronavirus-tracker/>

²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를 팬데믹(대유행전염병)으로 규정(WHO characterizes COVID-19 as a pandemic)", 2020. 3. 11, <http://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events-as-they-happen>

³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ICESCR, 이하 사회권규약), 유엔 문서 E/C.12/2000/4, 2000,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C.12/2000/4&Lang=en, (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⁴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43, 44, 47절, 47절은 43절의 '핵심 의무'가 불가침하다고 명시한다. 44절에 따라, 사회권규약위원회는 43절과 44절의 국가 의무를 '비견할 만한 우선순위'로 동일하게 규정한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C.12/2000/4&Lang=en.

⁵ "3주차에 접어들어 중국 우한의 대대적인 1,100만 명 격리조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China's unprecedented quarantine of 11 million people in Wuhan is 3 weeks old. Here's what it's like in the isolated city)",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2020. 2. 15, www.businessinsider.com/wuhan-coronavirus-what-life-like-inside-quarantined-city-china-2020-2?r=US&IR=T; "코로나바이러스: 이탈리아 적색구역에 격리되다(Coronavirus: Quarantined inside Italy's red zone)", BBC 뉴스, www.bbc.co.uk/news/world-europe-

따라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격리 조치로 인해 인권 행사를 막는 추가적인 제약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용품,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며, 출근을 할 수 없어 업무나 보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어려움을 겪는다.⁶ 그 밖에도 격리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특히 보건용품, 식품 등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한 빈곤층이 겪는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무급휴가 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쓸 저축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격리조치는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중보건과 같은 구체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일치해야 한다".⁷ 자유권규약의 전문해석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조항의 규제 및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CCPR, 이하 "시라쿠사 원칙")은 언제 어떻게 인권 제약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⁸ 1) 자유권규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의 제약은 비차별적이며, 2) 모든 인권 제약은 시급한 공공 및 사회의 필요를 기반으로 정당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고,⁹ 3) 국가는 인권 제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되며, 4)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제약을 정당화할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5) 모든 제약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남용되는 경우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¹⁰ 공중 보건을 위한 권리의 제약에 대하여 시라쿠사 원칙은 "질병 혹은 상해 예방, 환자와 부상자 치료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¹¹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제14호에 따르면 공중보건을 위한 모든 제약 및 제한은 "국제인권기준을 포함한 법을 따라야 하며, 사회권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과 맞아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민주사회에서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해야 한다".¹² 격리 조치는 기한이 설정되어야 하며,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대안 중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방안이 선택되어야 한다.¹³ 격리 및 분리 조치는 안전과 존중에 기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적인 인권 향유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격리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가능한 한 자발적이어야 한다. 격리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는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 및 시행해야 한다. 특히 격리 대상자에게 인도적인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검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격리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하고, 적절한 거처, 식품, 물, 위생 등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체계 도입, 이동의 자유에 대한 기타 제약 관련 정부의 모든 결정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여행 금지 및 제한

51651099; "코로나바이러스: 일본 정부 크루즈선 대응 변호(Coronavirus: Japan gov't defends handling of ship quarantine), 알자지라(Al Jazeera)

<http://www.aljazeera.com/news/2020/02/coronavirus-japan-govt-defends-handling-ship-quarantine-200220111441912.html>

⁶ "건강한 우한 거주민들이 강제로 집단 격리되어 감염의 위험 속에 있다고 밝혔다(Healthy Wuhan residents say they were forced into mass coronavirus quarantine, risking infection)", CNN 뉴스, 2020. 2. 24, edition.cnn.com/2020/02/22/asia/china-coronavirus-roundup-intl-hnk/index.html.

⁷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3항, (이하 자유권규약)

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조항의 규제 및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CCPR), 유엔문서 E/CN.4/1984/4 (1984), (이하 "시라쿠사 원칙");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HRC)는 일반논평에서 자유권규약에 따른 권리 제약의 타당성 지침을 추가 발행했다. 이 지침에서는 국가가 모든 권리 제약을 정당화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모든 조치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필요성, 비례성이 충족되며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자유권규약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사람의 자유와 안위에 대한 권리는 강제입원에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당사국의 경우 "모든 구금기간은 절대적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지 않으며, 전체 구금 가능 기간은 제한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상황에서 제9조에 따라 보장되는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구금된 사람에게는 구금 이유를 밝혀야 하며, 구금자는 독립적인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구금 조치는 공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제9조(사람의 자유와 안위) 2014, UN Doc. CCPR/C/GC/35 (2014), 15절; 의견과 표현의 자유 관련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 제약은 불가피하고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 UN Doc. CCPR/C/GC/34, 34절;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이동의 자유 제약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민주사회 시민의 보호를 위해 필연적이어야 하고,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제약사항은 비차별적이며, 목적에 비례하고,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27호: 제12조 (이동의 자유) (1999), 유엔문서 CCPR/C/21/Rev.1/Add.9, 11-18절.

⁹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29절에 따르면 모든 제약은 "비례적이어야(예: 가장 비제한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함)" 하며 "기한이 있고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¹⁰ 시라쿠사 원칙, 8-12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라쿠사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비상 상황에 적용되는 인권기준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을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제29호, 비상사태 (제4조), 유엔문서 CCPR/C/21/Rev.1/Add.11 (2001), 10절.

¹¹ 시라쿠사 원칙, 25절.

¹²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14호, 28절.

¹³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14호, 29절.

여행 금지 및 제한과 같은 기타 대응책들 또한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를 떠날 자유, 자국을 입국할 자유를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해당된다.¹⁴ 일부 국가에서는 국경을 폐쇄하고¹⁵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는 입·출국 금지령을 내렸다.¹⁶ 이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¹⁷, 일상 사업 업무를 보는 사람들, 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영향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입·출국 금지령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유행지역 대상 여행 혹은 무역 제한조치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최근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필요한 원조와 기술적 지원을 차단할 위험이 있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고, 관련 국가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에서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이지 않으며, 다른 대응책에서 필요한 자원이 유용될 수 있다.”¹⁸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당화(위 참조)가 될 때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다.¹⁹ 여행 금지 및 제한의 경우, 앞서 소개된 시라쿠사 원칙에 따른 해석을 기반으로 자유권규약의 의무와 부합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차별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이 포함된다. 즉, 여행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대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성, 투명성 및 검열

자유권규약 제19조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주고받을 자유”를 보호한다. 이 권리는 공중보건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앞서 기술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의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역사회 내 주요 건강 문제의 예방법,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권의 핵심 의무에 있어 “비견할 만한 우선순위의 의무”로 간주된다.²⁰ 정보 접근성은 곧 보건으로 접근의 중요한 측면이다. 여기에는 “건강 관련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주고받을 권리”가 포함된다.²¹ 영향을 받는 사람과 해당 지역 모두 건강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중인 대응책과 향후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등을 쉽고 의미 있는 정보로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며, 잘못된 자원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지역과 적기에 소통하여 보건 위기의 성격을 알리는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처음부터 지방 정부와 협업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사람들의 무력함, 분노, 좌절감이 커지고 공중 보건 대응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²²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법이 정보 제한, 투명성 결여, 검열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감염을 방지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어든다.

예방 조치, 용품 및 서비스

¹⁴ 자유권규약 12조.

¹⁵ “코로나바이러스: 이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Coronavirus: How is Iran responding to the outbreak?)”, BBC 뉴스, 2020. 3. 2, www.bbc.co.uk/news/world-middle-east-51642926

¹⁶ 국가별 여행 제한 및 출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www.iatatravelcentre.com/international-travel-document-news/1580226297.htm

¹⁷ “코로나19 여행 금지, 한국인 외국에서 발 묶여(COVID-19 travel bans trap South Koreans abroad)”,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 2020. 2. 25, 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ovid-19-coronavirus-travel-bans-trap-south-koreans-abroad-12469894.

¹⁸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확산 관련 세계보건기구의 업데이트된 국제운송 권고사항(Updated WHO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traffic in relation to COVID-19 outbreak)”, 2020. 2. 29, www.who.int/ith/2019-nCoV_advice_for_international_traffic-rev/en/

¹⁹ 자유권규약 제12조 3항.

²⁰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44절.

²¹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12(b)절.

²² “이란 지도부 잇따라 코로나 감염, 확진자 통계 정확도 의문(As Iran’s Leaders Contract Coronavirus, Doubts Emerge Over National Tally)”, WSJ, 2020. 2. 28, www.wsj.com/articles/as-irans-leaders-contract-coronavirus-doubts-emerge-over-national-tally-11582903223; “중국 정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어려움 겪어(Coronavirus disinformation creates challenges for China’s government)”, CNN 뉴스, 2020. 3. 2, edition.cnn.com/2020/03/01/asia/china-coronavirus-truth-rumors-intl-hnk/index.html

건강권에는 국가의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가 포함된다.²³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예방 조치, 용품 및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로 배포하는 것, 모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용품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독제, 마스크 등 보호 용품 부족이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²⁴ 지역 비정부기구인 공동체조직협회 (Society for Community Organisation, SoC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콩 저소득층 가구의 70% 정도가 마스크, 소독제 등 보호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형편이다.²⁵ 정부는 사용이 권장되는 개인보호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다른 국가 및 전 세계 지역으로 더 확산되는 것은 실재적인 위험이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노출된 국가는 100개국 이상이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의료체계가 부족한 국가가 많다. 건강권에는 국가의 국제 협력 및 공조 의무가 포함된다(아래 참조). 재정적, 기술적 역력이 있는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발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

이례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비상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수 있다. 국가의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전염병의 전염성 및 중증도가 심각할 때, 특히 이환율이 높을 때, 또는 추가 확산 위험이 있을 때) 정부는 국제법 및 기준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²⁶ “비상사태에 따른 설정 기간, 대상 지역, 물리적 범위, 법의 부분적 개폐”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는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²⁷ 이 과정에서는 비상사태 선포, 대응 조치에 대한 설명과, 조치의 시행 이유를 충분하고 명료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것 등 국제법에 따른 모든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상 사태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기간 연장에 앞서 정기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인권의 제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및 비용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단기간 내에 가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자 또는 접촉 의심 환자 등은 검진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바이러스의 증상과 그로 인한 영향을 관리하는 지지적 의료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률과 보건 의료 자원 가용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²⁸ 즉, 보건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가용성이 부족할수록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²⁹ 이 경우, 저소득층, 벽지 거주민, 소외계층 등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울 수 있다.

²³ 사회권규약, 제12조2항.

²⁴ “코로나바이러스: 이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Coronavirus: How is Iran responding to the outbreak?)”, BBC 뉴스, 2020. 3. 2, www.bbc.co.uk/news/world-middle-east-51642926

²⁵ “코로나바이러스: 새로운 조사 결과 홍콩 저소득층 가정, 마스크와 소독제 구매 어려워(Coronavirus: Hong Kong’s low-income families struggling to afford masks and disinfectant, new study claims)”,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2020. 2. 23, www.scmp.com/news/hong-kong/health-environment/article/3051968/coronavirus-hong-kongs-low-income-families

²⁶ 자유권규약 제4조;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27조;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5조.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 비상사태(제4조), 유엔문서 CCPR/C/21/Rev.1/Add.11 (2001).

²⁷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 비상사태(제4조), 유엔문서 CCPR/C/21/Rev.1/Add.11 (2001), 4절.

²⁸ 윤펑 지(Yunpeng Ji), 존그렌 마(Zhongren Ma) 외, ‘코로나19 사망률과 보건 의료 자원 가용성의 잠재적 연관성(Potential association between COVID-19 mortality and health-care resource availability)’, 란셋(The Lancet), 2020. 2. 25, [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20\)30068-1/fulltext](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20)30068-1/fulltext)

²⁹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극빈층은 일반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세계 3대 전염병(말라리아, HIV/AIDS, 폐결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성, 연령,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이주 여부 등과 관련된 기타 불평등 및 불공평으로 대부분 질병이 복합적으로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 “인권과 건강: 평가표(Human rights and health - Fact Sheet)”, 2017. 12. 29,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23/en/

건강권에 따라, 국가 내 보건의로 용품, 시설 및 서비스는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품, 시설 및 서비스에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로 서비스와 향후에 개발될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보도 포함된다. 또한 비차별 원칙에 의한 접근성, 의학윤리, 문화적·과학적·의료적 적절성, 용품과 서비스의 질 역시 확보해야 한다.³⁰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품과 서비스의 접근 안정성, 가격 합리성이 담보되고,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즉 보건의로 용품 및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어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접근성'의 개념에는 보건 관련 정보 역시 포함된다.

건강권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아우른다. 각국은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격리조치에 따른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감염자, 감염 의심 환자, 접촉자 등과 이들의 가족 모두 의미 있는 진료를 받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도권을 최대한 확보할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각국은 향후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가격 합리성, 접근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약회사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모든 관련 주체가 인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¹ 나아가 정부는 전 국민이 필수적인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코로나19 감염의 효과적인 예방 측면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특정 집단이 겪는 특정하고 불균형적인 피해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중증도와 사망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고령자와 기존 질병이 있는 환자(천식, 당뇨 혹은 심장병)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³² 아직 성별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과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돌아보면 여성과 소녀들은 특정하고 불균형적인 피해를 겪었다.³³ 이것은 비공식 부문과 보건 및 사회 분야에서 여성이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³⁴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 또한 건강관리와 의사결정권에 대한 성별 불평등과도 연관성이 있다.³⁵ 여성, 소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위해 모든 대응책에는 성별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별 분석을 통해 건강, 안전, 기타 인권 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특정 필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생리위생 제품과 용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임신부나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게 관련 용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일례로 빈곤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예방조치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떨어지며, 노숙자는 자가격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더 취약하며, '손 자주 씻기'와 같이 현재 권고되고 있는 예방조치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적절한 예방조치 없이 감옥³⁶이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근무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근무 혹은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다.

³⁰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12절.

³¹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제약회사 인권지침(Human Rights Guidelines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in relation to Access to Medicines), 유엔문서 A/63/263 (2008), www.who.int/medicines/areas/human_rights/A63_263.pdf

³² 세계보건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중 권고: 미신 타파(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2020), 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myth-busters

³³ 유엔연구기금, "신 에볼라 발생,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여성과 소녀에 가장 큰 피해)(New Ebola outbreak hits women and girls hardes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8. 9. 10, www.unfpa.org/news/new-ebola-outbreak-hits-women-and-girls-hardest-democratic-republic-congo.

³⁴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보건 및 사회 부문 노동자의 70%는 여성이다.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종사자의 성평등: 104개국 분석(Gender equity in the health workforce: Analysis of 104 countries)",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1 참조, https://www.who.int/hrh/resources/gender_equity-health_workforce_analysis/en.

³⁵ 클레어 벤햄(Claire Wenham), 줄리아 스미스(Julia Smith) 외, "코로나19 발생의 성별 영향(COVID-19: the gendered impacts of the outbreak)", The Lancet, 2020. 3. 6, [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Wenham](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Wenham).

³⁶ 사례 참조: "이란, 코로나19 공포 확산 가운데 나자닌 자가리-라트클리프의 무조건적 석방 요청(Iran: amid coronavirus fears, Nazanin Zaghari-Ratcliffe should be released unconditionally)",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 언론 보도, 2020. 3. 3, www.amnesty.org.uk/press-releases/iran-amid-coronavirus-fears-nazanin-zaghari-ratcliffe-should-be-released

코로나19 전염의 여파가 커지면서 저소득층, 불안정하고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경제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³⁷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성할 때는 이러한 특정 집단에 미치는 특정 영향을 고려하고, 계획 및 전략에 취약계층의 필요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 국가의 공중보건체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별도로 만성질환 환자, 고령자, 임부 등 정기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³⁸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여성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의료진과 의료 자원이 분산되어 출산 전 의료 서비스와 출산을 도와줄 숙련된 의료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³⁹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도 이로 인해 더욱 고립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⁴⁰ 각국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 용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및 대응을 할 때 각국은 이것이 의료체계 및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사회 보장 및 노동권

여행 금지, 격리조치, 공공집회 제한 등 공중보건을 위해 도입된 여러 조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근무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주민 노동자⁴¹,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인구⁴², 저소득층, 비정규 이주민,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적절한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격리 대상자가 되어 병가 중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금을 잃게 된다. 나아가 병에 걸릴 경우 검사 및 치료에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유급 병가, 의료 서비스, 육아휴직이 포함된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한다.⁴³ 아픈 경우, 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휴교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조치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공중보건 조치를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일례로 사회보장연금의 접근성이 높다면 사람들은 격리의 부정적 여파 없이 격리 조치에 따른 확률이 더 높다.

낙인과 차별 방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특정 국가 소속 혹은 인종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낙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식당의 영업을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⁴⁴ 중국 손님을 거부하는 식당과 호텔도 있다.⁴⁵ 일부 국가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괴롭힘과 인종차별을 당해 신체적 부상을 입는 경우도

³⁷ "저희들은요? 1만 홍콩달러 지원 자격 미달된 홍콩 빈곤층이 부당함을 외치다(What about us? Needy in Hong Kong who fall short of mark for HK\$10,000 government handout cry foul)",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2020. 2. 26, www.scmp.com/news/hong-kong/hong-kong-economy/article/3052526/what-about-us-needy-hong-kong-who-fall-short-mark

³⁸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다른 중증환자라면?(What Happens If You're Critically Ill In China — But Not With Coronavirus)", NPR, 2020. 2. 25, 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2/25/805712259/what-happens-if-youre-critically-ill-in-china-but-not-with-coronavirus

³⁹ "울고 싶은 심정: 중국에서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I Felt Like Crying': Coronavirus Shakes China's Expecting Mothers)",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2020. 2. 25, www.nytimes.com/2020/02/25/business/coronavirus-china-pregnant.html;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 자원이 비상대책에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신부 사망률이 기록되는 중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⁴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홍콩 독거노인 취약: 고립과 공포(Amid coronavirus outbreak, bigger killers lurk for Hong Kong's elderly living alone – isolation and panic)",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2020. 2. 29, www.scmp.com/news/hong-kong/health-environment/article/3052694/amid-coronavirus-outbreak-bigger-killers-lurk

⁴¹ "코로나19 발생: 이주민 노동자는 어떻게 하나?(Coronavirus outbreak: What do migrant workers do?)", 알자지라(Al Jazeera), 2020. 3. 5, www.aljazeera.com/news/2020/03/coronavirus-outbreak-migrant-workers-do-200305102831177.html

⁴²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책 없다. 긱 이코노미 노동자는 아플 형편도 못 된다(I catch the coronavirus I'm screwed. Gig economy workers can't afford to be ill)", 가디언지(The Guardian), 2020. 3. 7, www.theguardian.com/world/2020/mar/07/gig-economy-workers-on-breadline-too-poor-to-stay-at-home-if-they-catch-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Coronavirus: 'If I become ill I'll have to work')", BBC 뉴스, 2020. 3. 9, www.bbc.co.uk/news/business-51800050 참조.

⁴³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회적약위원회, 일반노동 제19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유엔문서 E/C.12/GC/19 (2008) 참조.

⁴⁴ "코로나 공포로 중국 식당 사업 저조(Chinese restaurants are losing business over coronavirus fears)", CNN 뉴스, 2020. 2. 18, edition.cnn.com/2020/02/18/australia/australia-chinese-restaurants-coronavirus-intl-hnk-scli/index.htm

⁴⁵ "코로나 시대의 공포: 중국인 환영 못 받아(Fear in the Age of Coronavirus: Chinese No Longer Welcome)", 블룸버그(Bloomberg), 2020. 1. 30,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1-30/fear-in-the-age-of-coronavirus-chinese-no-longer-welcome

있었다.⁴⁶ 정부의 모든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다양한 인권 법률문서에서 다루는 평등 및 비차별 원칙을⁴⁷ 지켜야 한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즉각적인 공통의 의무이며 국제법에 따라 보장되는 모든 인권의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에 따라,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된다. 정부는 개인의 실제 혹은 짐작되는 건강상태가 사회권규약에 따른 권리 실현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실제 혹은 짐작되는 건강상태에 기인하는 낙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낙인이 당사자의 인권 향유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공공보안기관 또한 이러한 낙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인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브리핑에서 밝힌 낙인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건강할 습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진다.⁴⁹ 마찬가지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낙인은 질병이 아닌 사람에게 공포와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⁵⁰ 각국은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행위를 규율하고 모든 개인을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 정책 및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은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무, 심리적 피로와 고통도 포함된다. ⁵¹ 코로나19 사태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현재 검토되고 있으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3천 명이 넘는 보건의료노동자가 감염되었다고 한다.⁵²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에는 2019년 말 이번 의료 위기 발생에 대해 처음으로 알렸으나 정부에 의해 목살당하고 처벌받은故 리원량(Li Wenliang) 의사도 있다.⁵³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국은 “산업재해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관된 국가 정책을 수립, 시행 및 정기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 안전과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관된 국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⁵⁴ 여기에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무환경도 포함된다. 간호사, 의사, 기타 의료진 및 대응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정보, 훈련, 심리사회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⁵⁵ 정부는 의료진의 가족, 코로나19 노출에 따라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사망한 자를 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국제협력과 공조

⁴⁶ “코로나바이러스: 네덜란드에서 인종차별적 노래를 부르는 소년들을 제지하다가 공격당한 네덜란드계 중국인 여성(Coronavirus: Dutch-Chinese woman attacked after asking a group of Dutch boys to stop singing a racist song)”, 더치리뷰(Dutchreview), 2020. 2. 24, dutchreview.com/news/coronavirus-dutch-chinese-woman-attacked-over-racist-song/; “싱가포르인 유학생 런던에서 코로나 관련 인종차별적 놀림에 대응하려다 폭행당하다(Singaporean student in London bashed after responding to racist coronavirus taunts)”, SCMP, 2020. 3. 3, www.scmp.com/news/asia/southeast-asia/article/3064742/singaporean-student-london-bashed-after-responding-racist; *Doctors and nurses at Melbourne hospital racially abused over coronavirus panic*, The Guardian 2020. 2. 27, 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7/doctors-and-nurses-at-melbourne-hospital-racially-abused-over-coronavirus-panic

⁴⁷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사회권규약 제 2조; 자유권규약 제2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조; 미주인권협약 제1조.

⁴⁸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비차별 원칙(사회권규약 제2(2)조), 유엔문서 E/C.12/GC/20 (2009), 33절.

⁴⁹ 세계보건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보고서 – 35, 2020. 2. 24, 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224-sitrep-35-covid-19.pdf?sfvrsn=1ac4218d_2

⁵⁰ 미국 질병관리본부, “오명과 회복력(Stigma and Resilienc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related-stigma.html>

⁵¹ 세계보건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 직업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보건의료종사자의 권리, 역할 및 책임(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Righ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ealth workers, including key consider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who-rights-roles-respon-hw-covid-19.pdf?sfvrsn=bcabd401_0, (이하 “코로나19: 보건의료종사자의 권리, 역할, 및 책임”).

⁵² “중국 보건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약 3,400명, 사망자 13명(Nearly 3,400 Chinese healthcare workers have gotten the coronavirus, and 13 have died)”,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2020. 3. 5, www.businessinsider.com/healthcare-workers-getting-coronavirus-500-infected-2020-2?r=US&IR=T

⁵³ “중국: 의사 사망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권 문제 부각(Doctor’s death highlights human rights failings in coronavirus outbreak)”, 국제앰네스티, 2020. 2. 7, 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2/china-doctor-death-highlights-human-rights-failings-in-coronavirus-outbreak

⁵⁴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36절.

⁵⁵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보건의료종사자의 권리, 역할, 및 책임”(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Righ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ealth workers, including key consider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who-rights-roles-respon-hw-covid-19.pdf?sfvrsn=bcabd401_0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원조는 필수적이다. 대다수의 국가는 인권 보장 의무에 건강권의 측면 등에 의거한 국제공조와 원조의 의무를 포함한다고 인정한다.⁵⁶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질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선진국인 당사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특별 책임과 이해 관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⁵⁷

각국 정부는 관할 구역 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바이러스의 영향, 잠재적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에 공유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자원이 없는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국제 공조 및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여력이 있는 모든 국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응을 할 때에는 그 자체로 인권을 존중하고, 즉각적인 필요만큼 장기적인 필요 역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특정, 소외계층의 필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위협을 받는 국민을 지원 및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에 있다. 그러나 해당 정부는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당국이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해당 국제기구의 정책 및 의사결정이 자국의 인권 의무와 부합되게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⁸

국가의 국제협력의 의무 중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보의 공유이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코로나19 사태의 위험과 확산 현황, 예방 및 치료 방안에 대한 정보를 주요 이해 관계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 영향을 받는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잘 조율된 국제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건강권에 따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 주체가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⁵⁹

장기적인 회복과 후속조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바이러스에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보건체계와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원과 국제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보건 및 사회보장 체계의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은 집단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특정 국가의 보건체계 열악한 경우 이를 지원하고 강화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관련 국가의 경제 및 발전에 포괄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보고서들은 이미 코로나19나 잠재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⁶⁰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 규모가 작은 산업, 준비금이 충분치 않은 기업, 그리고 소득이 비교적 낮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전략에 이러한 영향이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에 정부와 기타 주체의 코로나19 발생 대응 노력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필요를 반영하고, 특정 대응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권 위협을 해결하고 완화해야 한다.

⁵⁶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38절, 45절.

⁵⁷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40절.

⁵⁸ 사회권규약위원회 보고지침(2008년), 3(c)절; 일반논평 제17호, 자신의 연구, 문학, 예술 작품에서 비롯되는 도덕적이고 중대한 이익을 보호받을 모든 저자의 권리(사회권규약 제15조, 1(c)절), 유엔문서 E/C.12/GC/17 (2006), 56절 참조.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초안, 유엔문서 A/66/10 (2011), 제61조, 62조.

⁵⁹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64절.

⁶⁰ 세계경제포럼, “코로나19의 경제 여파: 아이폰부터 태양전지판, 관광산업까지(The economic toll of the coronavirus – from iPhones to solar panels to tourism)”, 2020년 2월 21일, www.weforum.org/agenda/2020/02/economic-toll-coronavirus-manufacturing-tourism-china-asia/